



---

문서번호 : 20-04-변론센터-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담당 : 조영관 사무차장)

제 목 : **[보도자료] [변론센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

전송일자 : 2020. 4. 1.

전송매수 : 총 2 매

---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202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26. 과 3. 30. 에 총 40여개국 65개 공관에 선거사무를 중단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총 80,600명의 유권자(전체 재외선거인 171,959명의 46.8%)가 선거권 행사 기회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4. 변론센터는 2020. 3. 30. 경 독일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선거인들인 청구인들의 법률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심의한 뒤, 이 사건을 공익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2020. 4. 1. 오늘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5.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결정)을 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면 누구나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간에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 하여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평등한 선거권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적 요청” 이라고 선언하고,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협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과 판단은 이 사건 신청에서도 무겁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6.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29 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선거사무 중지결정을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가 없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가사,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제한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는 기본권인 선거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감사합니다.

- 첨부 :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익명)

2020.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000 외 24명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외 5  
(대표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2020. 3. 26. 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및 2020. 3. 30. 자 재외사무선거 중지결정은 각 위헌임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침해된 권리

국민주권(헌법 제1조), 선거권(헌법 제24조, 헌법 제41조 제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 침해의 원인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사무와 관련하여 2020. 3. 26.과 2020. 3. 30.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독 일대한민국대사관 ·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 를 2020. 4. 6. 까지 중지하기로 한 결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17호)」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포기한 자(이를 ‘외국국적동포’라 합니다)와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단지 국내가 아닌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을 뿐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법률상 지위는 국내 거주·정주하는 국민과 동일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법률 제17160호)」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서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대상자로 정하여, 등록대상자가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 총영사관 · 분관 또는 출장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 재외국민의 선거권

유권자인 국민이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함으로써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못한 경우 부재자투표(不在者投票)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비로소 인정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해외부재자투표 제도를 마련하였고, 제6·7대 대통령선거와 제7·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한 바 있

습니다. 이후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가 폐지되었고, 선거권을 박탈당한 재외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헌법재판소 1991. 1. 28. 선고 97헌마253 결정), 이후 주민등록이 된 해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권을 부인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7헌마99 결정), 이후 2007년 위 결정의 견해를 변경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舊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결정)을 하여, 지금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이른 바 있습니다.

특히,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면 누구나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 기간에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하여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평등한 선거권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라고 선언하고,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은 이 사건 신청에서도 무겁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 특례제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14장의2에서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①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②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 제2항은 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장을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재외투표관리관은 국외부재자 신고가 접수되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6에 따라 ‘공관부재자신고인 명부’를 작성하여 전산화한 이후, 이를 구·시·군 별로 분류하여 외교부장관을 경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재외국민의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여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등’이라 합니다)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그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고,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명부등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 2020. 3. 15.에 확정되었습니다)됩니다.

재외선거를 통해 투표한 투표용지는 선거일 당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하며, 명부확정 이후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국내로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선거권이 있는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된 이후에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20. 4. 1.)’ 에 국내 귀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체류국에서 재외투표의 방법으로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에 따르면, 재외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일이 4. 15. 이므로 이번 선거의 재외투표기간은 4. 1.부터 4. 6.까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지만,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거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제2항 제1호),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의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제2항 제2호)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제3항),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재외투표소에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하며(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제4항),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제7항).

#### **라.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미 실시된 재외투표는 규정에 따라 국내로 회송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2항).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후 재외투표기간 전(前)에 사정 변경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재외선거사무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기한이 경과된 재외선거사무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 마. 피청구인의 재외공관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18조 이하의 절차에 따라 재외선거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되었고, 오는 4. 1.부터 6일간 재외공관에서 진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기간에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재외투표기간을 불과 5일 남겨둔, 2020. 3. 26.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을 포함한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에 대한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관보공고 제2020-176호)을 하였고, 이후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직전인 2020. 3. 30. 오후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을 포함한 25개국 41개 재외공관에 대한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관보공고 제2020-182호)을 하였습니다.

니다(이하 위 각 결정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결정’ 이라고 합니다).

[갑 제2호증의1내지2 이 사건 결정 관보 공고]

[갑 제3호증의1내지2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2020. 3. 30. 현재 총 40개국 65개 공관의 선거사무가 중단되었으며,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전 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공관(총176개) 중 36%에 달합니다. 특히,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독일과 캐나다는 모든 지역에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공관의 선거사무가 중단되어 채류국에서 투표권을 전혀 행사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구인들과 같이 투표권을 박탈당한 재외선거인은 총 80,500명으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인 171,959명의 46.8%에 해당합니다.

[갑 제4호증 재외선거관리위원회현황]

## II. 심판청구요건 충족 여부

### 1. 청구인 적격

청구인들은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들로써, 이 사건 중지결정으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선거사무가 중지되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당한 재외국민입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청구인 적격은

인정됩니다.

## 2. 공권력의 행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공공단체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2항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권적 작용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 3. 법적 관련성(현재성, 자기관련성)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으로 선거사무가 재외투표기간 종료일인 4. 6.까지 중단되어, 청구인들은 4. 1.부터 4. 6.까지 예정된 재외투표기간 동안 선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청구인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제한받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음이 명백합니다.

## 4. 보충성

이 사건 결정은 그 대상을 재외공관으로 하고 있고, 그 효과는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중지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립된 법원의 선례가 존재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2항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중지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특별한 구제절차를

보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2항은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들에게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다른 구제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중지결정을 다투기 위해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보충성 원칙이 문제되지 않거나 그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적법합니다.

## 5. 청구기간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0. 3. 26.부터 90일 이내라는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청구입니다.

## 6. 권리보호이익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귀 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적시에 심리하지 않음으로써 4월 6일 이후 권리보호 이익이 존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중지결정으로 인한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로 그 해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이 문제가 해명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기본권 침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대리인들은 귀 재판소가 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시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는 경우라도 그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지속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Ⅲ.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 **1. 선거권의 침해**

##### **가. 선거권의 법적 의의와 선거권 제한의 한계**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의 중요한 의미는 국민의 합의로 국가권력을 조직한다는 것(헌재 1989. 9. 8. 88헌가6, 판례집 1, 199, 205)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폭넓게 보장될 것이 요구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 국민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통로입니다(헌재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 결정 등).

국민주권의 원리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참여를 위하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1조는 정치적 생활영역에서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선거권과 선거원칙을 이 같이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통해서만 국가와 국가권력의 구성과 창설이 비로소 가능해지고 국가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헌재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결정).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국민주권의 현실적 행사수단으로서 한편으로는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서 기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기적 선거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한 선거권(이하 이를 편의상 ‘국정선거권’이라 합니다)을 비롯한 국민의 참정권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헌재 1989. 9. 8. 선고 88헌가6 결정)으로 평가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하라는 뜻이며 선거권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법률유보는 선거권을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권의 내용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조,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는 헌법 제41조 및 제67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한편으로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며, 또 다른 한편에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이러한 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가기관의 판단과 결정은 단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나.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의 필요성**

2018년 12월 기준,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재외동포의 수는 약 750만 명에 육박하고, 재외국민은 약 270 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단위: 명)

지역별	거주자격별	재외국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총계		1,031,782	1,362,175	293,157	2,687,114	4,806,473	7,493,587
동북아시아	일본	361,351	71,058	17,050	449,459	375,518	824,977
	중국	7,582	246,618	53,714	307,914	2,153,472	2,461,386
	소계	368,933	317,676	70,764	757,373	2,528,990	3,286,363
남아시아태평양		96,619	351,682	77,054	525,355	67,086	592,441
북미	미국	426,643	560,566	77,717	1,064,926	1,482,056	2,546,982
	캐나다	54,107	26,262	26,774	107,143	134,607	241,750
	소계	480,750	586,828	104,491	1,172,069	1,616,663	2,788,732
중남미		53,244	10,699	511	64,454	39,163	103,617
유럽		30,569	65,377	36,763	132,709	554,350	687,059
아프리카		1,555	8,584	588	10,727	150	10,877
중동		112	21,329	2,986	24,427	71	24,498

<재외국민 현황 집계표>

약 270 만 명의 재외국민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부등재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인의 숫자는 171,959명입니다. 즉,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은 전체 재외국민 중 적극적으로 투표의사를 가지고 절차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 등 절차를 거친 유권자입니다.

이들은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적극적인 유권자입니다. 특히, 각 지역별로 수 개의 투표소가 설치된 내국인 유권자와 달리 이들은 한 나라에 많지 않은 투표소까지 이동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주권자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주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국가는 마땅히 이러한 주권의 행사를 조력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다.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선거권 침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기관의 결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심사의 강도를 엄격하게 하여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선거사무 중지 결정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중지결정은 법률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중지결정의 근거로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 재난(감염병)”으로 인하여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을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2항은 그 요건으로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유로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결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청구인이 공직선거

법 규정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 아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유의 존재가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체류하고 있는 독일과 캐나다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2항에서 정한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① 독일의 경우

청구인 ○○○ 외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총 16개의 연방 주(州)에서 바이에른주를 제외하고 일반적 외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는 없습니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지난 23일부터 접촉 제한령을 통해 가족 단위를 제외하고 2인을 초과해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점 방문 등 단순 이동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 독일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공지한 “코로나19 관련 독일 연방주별 동향”에 따르면, 대한민국대사관의 관할 구역인 베를린의 경우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하고 있지만, ‘생필품 상점, 음료판매업체(심야판매점 포함), 우체국, 서점, 자전거점, 시장, 약국, 의료용품 판매점, 주유소, 은행, 세탁소, 미용실, 신문판매소, 건축자재 판매점, 동물용품 판매점, 도매상, 장의상 등은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 총영사관,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본분관 관할 지역도 “전면 통행금지” 또는 “이동 전면 중단”에 이른 곳은 없습니다.

[갑 제5호증의1내지7 코로나19 관련 독일 연방주별 동향]



정상 운영 대상 기관	적용 기관 구체	생필품 상점, 음료판매업체(심야판매점 포함), 우체국, 서점, 자전거점, 시장, 약국, 의약품품 판매처, 주유소, 은행, 세탁소, 미용실, 신문판매소, 건축자재 판매점, 동물용품 판매점, 도매상, 장의사 등	
	일요일 업무 금지 비적용		
행사 제한	제한기준	50명이상 50명미만 : 참석자명단작성(성명, 주소,전화번호) · 카지노, 바, 클럽, 박물관, 영화관, 극장, 수영장, 피트니스 스튜디오, 관광호텔 등 폐쇄 · 식당 : 8-18시영업가능. 단 테이블간 간격 1.5m유지 · 음식배달 혹은 ,주문후 픽업 가능 · 영업 가능 시설 : 슈퍼, 약국, 의류기기, 약품점, 은행, 주유소, 우체국, 미용실, 건축, 조경 및 반려동물물품구입처, 장의사 등 보건위생규칙준수	
식당/대중 시설 제한	대상 시설 및 구체 내용	도입 시기	2020.03.16 및 03.17 - 4.19 전학교 및 유치원
		휴교/휴원	교사들 휴식 의무 (주마다 별도 예외 규정, 예 60세이상교사, 교원협 환자 해당 교사) 긴급보육서비스제공 이하 직업군 자녀에 대해 긴급 보육 서비스 제공

## ② 캐나다의 경우

청구인 〇〇〇 외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에도 전면적인 이동 금지나 제한 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에 따르더라도,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 2인 이상 또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있지만 이 역시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며, 밴쿠버 총영사관이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경우에는 관련한 조치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갑 제6호증 캐나다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20. 3. 27. 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중 독일 지역에 설치된 모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공관(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주함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의 선거사무를 중단하는 결정을 하고, 2020. 3. 30. 에 추가적으로 캐나다 지역에 설치된 모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공관(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의 선거사무를 중단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이 체류하고 있는 개별 국가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 중단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예를 들어 공관폐쇄 등 객관적인 상황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등)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독일과 캐나다에 공직선거법 제218조29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만연한 이 사건 결정에 이르렀는바, 이는 법률에 근거가 없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가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이 공직선거법 제218조29 제2항에 따른 사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 ① 침해의 최소성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의 제한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특히,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 또는 이러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특별히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따라서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이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막연하고 추상적 위협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대한 심사숙고 과정없이 성급하게 선거사무 중단 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가기관이 주권자인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상의 고유한 의무입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①공직선거법 제218조의20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인력은 많지 않고 필요한 경우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②각 나라별로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의 숫자가 소수인 점(독일의 경우 4곳, 캐나다의 경우 4곳, 대부분의 국가는 1~2개소에 불과), ③재외투표의 경우 투표만 실시하고 개표는 관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점(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 ④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은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을 이 사건 결정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피청구인은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중 그 어느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를 5부제로 나누어 투표

소 인구 밀집도를 낮추거나, 야외 또는 주차장 등에 설치하여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투표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방식을 선택한 것인 바, 이 사건 결정은 과도한 방식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 입니다.

끝으로 해당 지역의 재외공관이 실제 모든 업무를 중단하는 폐쇄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선거업무 이외에 일반 행정업무를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선거사무에 대한 중지 결정을 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 ② 법익의 균형성

나아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①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에 처해져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 ② 공관 폐쇄 또는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 등으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③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우려 등을 이 사건 결정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 캐나다에서는 전 국민 자가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과 같은 고강도의 조치가 전면적으로 현실화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독일과 캐나다의 재외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신의 책임 아래 일상에 생필품의 구매 등 필수적인 외부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주재국의 형사적/행정적 불이익조치

가 부과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보호되는 재외국민의 안전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영역에 머무를 따름입니다.

또한 이 사건 결정에 의해 선거사무가 중지되는 독일과 캐나다의 각 공관들은 현재 폐쇄된바 없으며,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 등은 효율적인 국가행정사무처리를 위한 일시적 조치로서, 행정기관의 법률상 혹은 사실상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우려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며, 가사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제한을 가져올 만한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입는 헌법상 법익의 침해는 대단히 중대하고도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은 국민주권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기제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추입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이라 하여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다른 국민의 선거권과 달리 판단될 이유가 없으며, 재외국민의 선거권 또한 단순한 법률상 이익을 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임에는 그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법익의 침해는 매우 심대한 반면,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확보할 수 있는 법익은 추상적이거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법익의 균형성 또한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 2. 평등권의 침해

### 가. 평등권의 의의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공평하게 대우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국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합니다.

### 나.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적자입니다. 단지 선거기간 중에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우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거쳐 재외투표인명부등에 등재된 유권자입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간에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평등한 선거권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적 요청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국민의 거주지가 국내가 아닌 해외라고 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선거권이 공평하게 보장되지 못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선거사무의 판단과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중지 결정은 선거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성급하게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이는 그 자체로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재외국민 유권자의 선거권을 내국인의 선거권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IV. 결 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선거사무중지 결정이 헌법이 정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투표기간이 오는 4. 1.부터 4. 6.로 예정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1.

위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조영관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최용근

변호사 서채완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류다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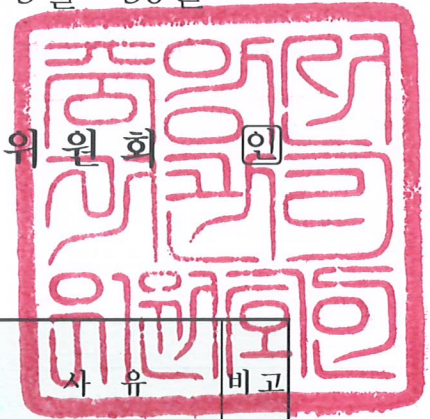
헌법재판소 귀중

##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관한 공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9에 따라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재외선거관의 명칭 (공관명)	약칭	위치	관할구역	사유	비고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뉴질랜드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뉴질랜드 웰링턴	뉴질랜드 (사모아독립국, 쿡제도, 통가왕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오클랜드분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오클랜드분관)	오클랜드분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뉴질랜드 오클랜드	오클랜드주, 와이카토주, 플렌티만주, 노스랜드주, 기스본통합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	말레이시아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첸나이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첸나이 대한민국총영사관)	첸나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인도공화국 첸나이	타밀나두주, 케랄라주, 카르나타카주, 안드라프라데시주, 푸두चे리 연방직할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필리핀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세부분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필리핀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세부분관)	세부분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필리핀공화국 세부	기마라스주, 남레이테주, 동네그로스주, 동사마르주, 레이테주, 보홀주, 북사마르주, 빌리란주, 서네그로스주, 서사마르주, 세부주, 시키호르주, 아크란주, 안티케주, 일로일로주, 카피즈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도미니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도미니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도미니카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바하마연방,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공화국, 앤티가바부다)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미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합중국 워싱턴	미합중국 중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 관·주로스앤젤레스대한 민국총영사관·주보스턴 대한민국총영사관·주샌 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 영사관·주시애틀대한민 국총영사관·주시카고대 한민국총영사관·주애틀 랜타대한민국총영사관· 주호놀룰루대한민국총 영사관 및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 사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합중국 뉴욕	뉴욕주, 코네티컷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 펜실베이니아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합중국 로스앤젤레스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중 샌루이스어비스포군, 킨군 및 샌버너디노군을 포함한 그 이남지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보스턴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보스턴 대한민국총영사관)	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합중국 보스턴	메인주, 뉴햄프셔주, 버몬트주, 매사추세츠주, 로드아일랜드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합중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중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 국총영사관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각 군, 와이오밍주, 유타주, 콜로라도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	시애틀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합중국 시애틀	몬태니주, 아이다호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알래스카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시카고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시카고 대한민국총영사관)	시카고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합중국 시카고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 미주리주, 사우스다코타주, 네브래스카주, 아이오와주,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캔자스주, 노스다코타주, 켄터키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애틀랜타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애틀랜타 대한민국총영사관)	애틀랜타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합중국 애틀랜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앨라배마주, 조지아주, 테네시주, 플로리다주, 푸에르토리코주, 버진아일랜드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호놀룰루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호놀룰루 대한민국총영사관)	호놀룰루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합중국 호놀룰루	하와이주, 아메리칸사모아, 괌섬, 북마리아나제도연방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휴스턴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휴스턴 대한민국총영사관)	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합중국 휴스턴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 아칸소주,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 앵커리지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 앵커리지출장소)	앵커리지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합중국 앵커리지	알래스카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감염병	
주휴스턴 대한민국총영사관 댈러스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휴스턴 대한민국총영사관 댈러스출장소)	댈러스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합중국 댈러스	댈러스, 포스워스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볼리비아다민족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볼리비아다민족국 대한민국대사관)	볼리비아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볼리비아 다민족국 라파스	볼리비아다민족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감염병	
주상파울루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상파울루 대한민국총영사관)	상파울루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브라질 연방공화국 상파울루	상파울루주, 파라나주, 산타카타리나주, 히우그란지두술주, 마투그로수주, 마투그로수두술주, 리우데자네이루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칠레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칠레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칠레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칠레공화국 산티아고	칠레공화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	캐나다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 중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 영사관 겸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 한민국대표부·주밴쿠버 대한민국총영사관 및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 사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몬트리올 대한민국총영사관겸 주국제민간항공기구 대한민국대표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몬트리올 대한민국총영사관겸 주국제민간항공기구 대한민국대표부)	몬트리올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캐나다 몬트리올	퀘벡주,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뉴펀들랜드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밴쿠버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밴쿠버 대한민국총영사관)	밴쿠버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사스키추완주, 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토론토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토론토 대한민국총영사관)	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주(오타와시 제외), 마니토바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트리니다드 토바고공화국 포트오브스페 인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파라과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파라과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파라과이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파라과이 공화국 이순시온	파라과이공화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페루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페루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페루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페루공화국 리마	페루공화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네덜란드왕국 대한민국대사관겸 주헤이그국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네덜란드왕국 대한민국대사관겸 주헤이그국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네덜란드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네덜란드왕국 헤이그	네덜란드왕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벨기에왕국 대한민국대사관겸 주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벨기에왕국 대한민국대사관겸 주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벨기에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벨기에왕국 브뤼셀	벨기에왕국 (룩셈부르크대공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체코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체코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체코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체코공화국 프라하	체코공화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레바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레바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레바논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레바논공화국 베이루트	레바논공화국, 시리아아랍공화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모로코왕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모로코왕국 대한민국대사관)	모로코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모로코왕국 라바트	모로코왕국 (모리타니아이슬람공화 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한민국대사관)	아랍에미리트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중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 사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	두바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두바이	두바이 에미리트, 샤자 에미리트, 아즈만 에미리트, 라오스 알-카이마 에미리트, 움무 알 콰인 에미리트, 후자이라 에미리트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요르단왕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요르단왕국 대한민국대사관)	요르단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요르단왕국 암만	요르단왕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이스라엘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이스라엘국 대한민국대사관)	이스라엘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이스라엘국 텔아비브	이스라엘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앙골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앙골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앙골라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앙골라공화국 루안다	앙골라공화국 (나미비아공화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적도기니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말라보분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적도기니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말라보분관)	말라보분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적도기니 공화국 말라보	적도기니공화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사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탄자니아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탄자니아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	탄자니아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탄자니아 합중국 다르에스살람	탄자니아합중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 별도의 재개 결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2020. 4. 6.까지 중지

##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관한 공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9에 따라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재외선거관의 명칭 (공관명)	약칭	위치	관할구역	사유	비고
주네팔연방민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네팔연방민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네팔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네팔연방 민주공화국 카트만두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뭄바이대한민국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뭄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	뭄바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인도공화국 뭄바이	마하라슈트라주, 구자라트주, 텔랑가나주, 마드야프라데시주, 고아주, 다드라-나가르하벨리, 다만-디우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파푸아뉴기니독립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파푸아뉴기니독립국 대한민국대사관)	파푸아뉴기니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파푸아뉴기니 독립국 포트모르즈비	파푸아뉴기니독립국 (바누아투공화국, 솔로몬제도)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필리핀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필리핀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필리핀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필리핀공화국 마닐라	필리핀공화국 (팔라우공화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호놀룰루 대한민국총영사관 하갓냐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호놀룰루 대한민국총영사관 하갓냐출장소)	하갓냐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합중국 하갓냐	팜도, 북마리아나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에콰도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에콰도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에콰도르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에콰도르 공화국 키토	에콰도르공화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온두라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온두라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온두라스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온두라스 공화국 테구시갈파	온두라스공화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콜롬비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콜롬비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콜롬비아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콜롬비아 공화국 보고타	콜롬비아공화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독일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독일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독일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독일연방 공화국 베를린	독일연방공화국 중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 국총영사관 및 주함부르크대한민국총 영사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총영사관)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독일연방 공화국 프랑크푸르트	헤센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함부르크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함부르크 대한민국총영사관)	함부르크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독일연방 공화국 함부르크	함부르크주, 브레멘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니더작센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독일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독일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	본분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독일연방 공화국 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라인란트-팔츠주, 자이란트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스페인왕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스페인왕국 대한민국대사관)	스페인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스페인왕국 마드리드	스페인왕국 중 주바르셀로나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안도라공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바르셀로나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바르셀로나 대한민국총영사관)	바르셀로나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스페인왕국 바르셀로나	까탈루냐주, 발렌시아주, 발레아레스 제도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스페인왕국 대한민국대사관 라스팔마스분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스페인왕국 대한민국대사관 라스팔마스분관)	라스팔마스분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스페인왕국 라스팔마스	카나리아군도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아일랜드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아일랜드 대한민국대사관)	아일랜드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아일랜드 더블린	아일랜드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감염병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영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영국 런던	영 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이탈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이탈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이탈리아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이탈리아 공화국 로마	이탈리아공화국 중 주밀라노대한민국총영 사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몰타공화국, 산마리노공화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감염병	
주밀라노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밀라노 대한민국대사관)	밀라노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이탈리아 공화국 밀라노	페에몬테주, 발레다오스타주, 롬바르디아주, 리구리아주, 트렌티노-알토아디제주, 베네토주, 프리울라베네치아줄리아주, 에밀리아-로마냐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키르기스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키르기스 공화국 비슈케크	키르기스공화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프랑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프랑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프랑스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프랑스공화국 파리	프랑스공화국 (모나코공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가나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가나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가나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가나공화국 아크라	가나공화국 (베냉공화국, 토고공화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왕국, 보츠와나공화국, 에스와티니왕국)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 별도의 재개 결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2020. 4. 6.까지 중지

##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23개 재외공관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국민의 안전과 이동제한 등 재외선거 진행이 어려운 현실 고려 =

= 52개 공관 재외투표기간 단축, 추가투표소 10개 미설치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olleh tv** 273번 **t-broad** 205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2020. 4. 6.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 16. 주우한총영사관에 이어 두 번째 중지 결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과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부득이 10개를 미설치하기로 하였다.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하여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24(재외투표의 개표)제3항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되, 늦어도 4.11.까지 공관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4.1.)전에 귀국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신고기간(4. 1. ~ 4. 15.)과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하여 참정권 행사를 보장할 계획이다.

붙임 1.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대상공관 1부.

2. 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1부.

##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공관

순번	국가	재외공관명	선거인수
1	네 팔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286
2	인 도	주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185
3	파푸아뉴기니	주파푸아뉴기니대한민국대사관	47
4	필 리 핀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3,286
5	미 국	주하갓냐대한민국출장소	255
6	에 과 도 르	주에과도르대한민국대사관	224
7	온 두 라 스	주온두라스대한민국대사관	59
8	콜 롬 비 아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240
9	독 일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1,573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2,538
		주함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	749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	1,079
10	스 페 인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437
		주바르셀로나대한민국총영사관	206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라스팔마스분관	90
11	아 일 랜 드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349
12	영 국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2,270
13	이 탈 리 아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580
		주밀라노대한민국총영사관	546
14	키 르 기 즈	주키르기즈대한민국대사관	258
15	프 랑 스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2,839
16	가 나	주가나대한민국대사관	107
17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189
합 계		23개 재외공관	18,392



## 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 ○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 「귀국투표」를 하려면

1.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를 준비합니다.

※ 정부24(www.gov.kr) 또는 구·시·군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2.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위에 제출합니다. 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국외부재자는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은 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구·시·군선거관위에서 교부한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구·시·군선거관위나 중앙선거관위 선거2과(02-504-5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미국대사관 등 41개 재외공관 재외선거사무 추가 중지 결정

= 재외선거사무 중지 지역, 총 40개국 65개 공관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alleg tv** 273번 **t-broad** 205번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지난 3. 26.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한데 이어 추가로 주미국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2020. 4. 6.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주우한 총영사관 등을 포함하여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이르며 해당 지역 재외 선거인은 80,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1,959명의 46.8%에 해당한다.

지난 3. 26. 일부 지역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 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기간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후 미국, 캐나다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었거나, 주재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신중히 논의한 끝에 재외 선거사무를 추가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4.1. ~ 4.6. 기간중 재외투표가 실시되므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재외투표소를 방문하는 재외국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만, 재외투표기간 중에 주재국의 제재조치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중지 결정할 예정이다.

붙임 재외선거사무 추가 중지 결정 공관 1부.

[붙임1]

## 재외선거사무 추가 중지 결정 공관

순번	국가	재외공관명	선거인수
1	뉴질랜드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	235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오클랜드분관	1,592
2	말레이시아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1,746
3	인도	주첸나이대한민국총영사관	766
4	필리핀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세부분관	532
5	도미니카공화국	주도미니카대한민국대사관	127
6	미국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3,711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7,350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7,662
		주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	1,628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4,342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	2,877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3,660
		주애틀랜타대한민국총영사관	5,409
		주호놀룰루대한민국총영사관	595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	1,622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앵커리지출장소	135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델러스출장소	1,316
7	볼리비아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82
8	브라질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	2,277
9	칠레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385

순번	국가	재외공관명	선거인수
10	캐나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366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	487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3,592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3,868
11	트리니다드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21
12	파라과이	주파라과이대한민국대사관	583
13	페루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276
14	네덜란드	주네덜란드대한민국대사관	721
15	벨기에	주벨기에대한민국대사관	283
16	체코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	506
17	레바논	주레바논대한민국대사관	332
18	모로코	주모로코대한민국대사관	137
19	아랍에미리트	주UAE대한민국대사관	1,337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641
20	요르단	주요르단대한민국대사관	212
21	이스라엘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197
22	앙골라	주앙골라대한민국대사관	35
23	적도기니	주적도기니대한민국대사관말라보분관	27
24	콩고민주공화국	주콩고민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68
25	탄자니아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219
합계		25개국, 41개 공관	61,957



# 재외위원회현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공관 현황(2019. 10. 18. ~ 2020. 5. 15.)

구분	계	대사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	대표부	비고
설치 공관 수	176	112	45	5	13	1	

지역	구분		공관명
아주 (52)	대사관	24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호주
	총영사관	21	베트남(호치민), 인도(뭄바이, 첸나이), 일본(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요코하마, 후쿠오카, 히로시마), 중국(광저우, 상하이, 선양, 시안, 우한, 청두, 칭다오, 홍콩), 호주(시드니)
	분관	5	뉴질랜드(오클랜드), 캄보디아(시엠립), 파키스탄(카라치), 필리핀(세부), 호주(멜번)
	출장소	1	선양(다렌)
	대표부	1	타이베이
미주 (38)	대사관	21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총영사관	13	미국(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호놀룰루, 휴스턴), 브라질(상파울루), 캐나다(몬트리올, 밴쿠버, 토론토)
	출장소	3	시애틀(앵커리지), 호놀룰루(하갓나), 휴스턴(댈러스)
	분관	1	자메이카(킹스턴)
구주 (48)	대사관	34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총영사관	9	독일(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스페인(바르셀로나), 이탈리아(밀라노), 카자흐스탄(알마티), 터키(이스탄불)
	출장소	1	블라디보스톡(유즈노사할린스크)
	분관	4	독일(본), 스페인(라스팔마스), 조지아(트빌리시), 타지키스탄(두산베)
중동 (18)	대사관	15	레바논,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총영사관	2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아랍에미리트(두바이)
	분관	1	이라크(아르빌)
아프리카 (20)	대사관	18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세네갈, 수단,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분관	2	나이지리아(라고스), 적도기니(말라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연락처    찾아오시는길    홈페이지도움말



[13809]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 02-503-1114 / 선거법질의·신고제보 : 국번없이 1390(유료)



- 뉴스
- 공지사항 >
- 독일뉴스 >
- 공관장 활동사항 >

### 공지사항

Home > 뉴스 > 공지사항



제목	[COVID 19 안전공지- 26]코로나19 관련 독일 연방주별 동향
작성자	주 독일 대사관
작성일	2020-03-25
첨부1	코로나19 관련 독일 연방주별 동향_독일대사관관할_베를린.hwp <input type="button" value="Q 바로보기"/>
첨부2	코로나19 관련 독일 연방주별 동향_본분관 관할_NRW주.hwp <input type="button" value="Q 바로보기"/>
첨부3	코로나19 관련 독일 연방주별 동향_함부르크 총영사 관할.hwp <input type="button" value="Q 바로보기"/>
첨부4	코로나19관련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관할 연방주별 동향.zip

대분류	세부항목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비고
감염관리	주무부처	주 보건부	
	별도 Hotline	0711-904-39555(매일 9시~18시) 0711-7877 320(의사협회), 0711 - 2284552/539/554/555/547/549/553(주치과 의사협회)	
	선별진료소 설치 여부 및 위치	대부분 지역 대형병원에 코로나 검사소 설치	
	검사 진행 절차	전화 문의 후 안내된 검사소 방문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보건당국 판단 및 지시에 따름	
정상 운영 대상 기관	적용 기관 구체	생필품 상점, 음료판매업체, 시장, 약국, 의료용품 판매처, 주유소, 은행, 세탁소, 신문판매소, 건축자재 판매점, 동물용품 판매점, 도매상 등	미용실 등 개인위생관리업 소 제외(4.5까지)
	일요일 업무 금지 비적용	비적용	
행사 제한	제한기준	공공장소에서 2인 초과 모임 금지(가족 제외), 위반시 벌금 25,000유로까지 가능, 개인간 거리 최소 1.5미터 간격 유지	3.23부터 4.5까지
식당/대 중시설 제한	대상 시설 및 구체 내용	○ 대부분의 문화, 여가, 스포츠, 종교 시설 (놀이터 포함) ○ 식당운영 금지(2020.3.21.~, 포장, 배달은 가능) ○ 프랑스 거주자의 슈퍼마켓 방문 금지	
휴교/휴 원	도입 시기	3.17	4.19까지
	교사 등 제한 조치	교장 출석 의무, 교사 재택근무 의무(유자녀 교사의 경우 업무분배에 있어 고려)	
	긴급보육서비스제공 (기준 등)	경찰, 의료계, 소방서 등 필수직군 종사자 자녀	다만, 부모 모두가 필수직 군에 종사 중이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국경 통제	적용 도로	○ IC, EC, 심야열차는 독일-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덴마크, 폴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구간 운영중단 ○ 그 외 기차의 경우 국경 지역에서 검사로 인해 운영시간 지연 ○ 도시 간 단거리 기차(RB 등) 감축 운영	
	LKW 자동 통과 시행 여부		
	PKW 입경 허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거리 버스(Flixbus, Blablabus는 3.18부터 운영중단)</li> <li>○ 시내 대중교통의 경우 승차권판매소 등 운영중단, 승차권 검표중단, 운전사 부족 및 승객감소로 부분적 감축 운영(휴가 및 방학 시기 배차 계획시행), 운전사 승차권 직접판매 중단</li> </ul>	
입국 제한	공항별 지침/운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이외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통한 비EU 회원국 국민 입국 금지(예외 : 독일 및 EU 영주권 및 장기거주비자 소유자)</li> <li>○ 3.16부터 공항 운영 제한 (귀국여행객 비행편은 운영, 위험지역 방문 여행객은 14일 자가격리)</li> </ul>	
병원 관리	해당 주 소재 대형병원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den-Wuerttembergische Krankenhausgesellschaft</li> <li>○ 3200개 응급 병상 확보</li> </ul>	긴급하지 않은 수술은 연기
기타			

대분류	세부항목	바이에른주	비고
감염관리	주무부처	주보건부	
	별도 Hotline	089 - 230211 340/342, 09131 6808-5101	
	선별진료소 설치 여부 및 위치	대부분 지역 대형병원에 임시검사소 설치	
	검사 진행 절차	전화 문의 후 안내된 검사소 방문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보건당국 판단 및 지시에 따름	
정상 운영 대상 기관	적용 기관 구체	생필품 상점, 음료판매업체, 시장, 약국, 의료용품 판매처, 주유소, 은행, 세탁소, 신문판매소, 동물용품 판매점, 도매상 등	건축자재상, 미용실 제외 (3.21~4.30)
	일요일 업무 금지 비적용	비적용	
행사 제한	제한기준	외출제한: 특별한 경우(직장, 병원, 약국, 생필품 구입, 산책 등)를 제외하고는 자택을 벗어날 수 없음. 위반시 벌금 25,000 유로까지 가능, 개인간 거리 최소 1.5미터 간격 유지	3.21~4.30까지
식당/대중시설 제한	대상 시설 및 구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문화, 여가, 스포츠, 종교 시설 (놀이터 포함)</li> <li>○ 식당운영 금지(2020.3.21.~, 포장, 배달은 가능)</li> </ul>	3.21~4.30까지
휴교/휴원	도입 시기	3.16	4.19까지
	교사 등 제한 조치	교장 출석의무, 교사는 근무의무만 가짐	
	긴급보육서비스제공 (기준등)	경찰, 의료계, 소방서 등 필수직군 종사자 자녀	부모 중 한쪽이 필수직군에 종사 중이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국경 통제	적용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EC,심야열차는 독일-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덴마크, 폴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구간 운영중단</li> <li>○ 그외 기차의 경우 국경지역에서 검사로 인해 운영시간 지연</li> <li>○ 도시간 단거리 기차(RB등) 감축 운영</li> <li>○ 장거리버스(Flixbus, Blablabus는 3.18부터 운영중단)</li> <li>○ 시내대중교통의 경우 승차권판매소 등 운영중단, 승차권 검표중단, 운전사 부족 및 승객감소로 부분적 감축운영(휴가 및 방학시기 배차 계획실시), 운전사승차권 직접판매 중단</li> </ul>	
	LKW 자동 통과 시행 여부		
	PKW 입경 허가 기준		

입국 제한	공항별 지침/운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이외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통한 비EU 회원국 국민 입국 금지(예외 : 독일 및 EU 영주권 및 장기거주비자 소유자)</li> <li>○ 뮌헨 공항은 현재 공항운영중단 계획 없음 (1일 500 여편 감소) / 23시 이후 야간 비행금지 완화조치</li> </ul>	
병원 관리	해당 주 소재 대형 병원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대학병원의 응급병상을 현 600개에서 1200개로 확대 계획</li> </ul>	긴급하지 않은 수술은 연기 (3.20~5.15)
기타			

대분류	세부항목	해선주	비고
감염관리	주무부처	주사회복지보건부	
	별도 Hotline	0800-5554666	매일 8-20시 운영
	선별진료소 설치 여부 및 위치	10군데 설치, 위치는 비공개	
	검사 진행 절차	전화 문의 후 안내된 검사소 방문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보건당국 판단 및 지시에 따름	
정상 운영 대상 기관	적용 기관 구체	생필품 상점, 음료판매업체, 시장, 약국, 의료용품 판매처, 주유소, 은행, 세탁소, 신문판매소, 건축자재 판매점, 동물용품 판매점, 도매상 등	미용실 등 개인위생관리업소 제외(3.23부터 4.5까지)
	일요일 업무 금지 비적용	비적용	
행사 제한	제한기준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의 모임 금지(가족 제외), 개인간 거리 최소 1.5미터 간격 유지	3.23부터 4.5까지
식당/대중시설 제한	대상 시설 및 구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의 대부분의 문화, 여가, 스포츠, 종교 시설 (놀이터 포함)</li> <li>○ 식당운영 금지(2020.3.21.12:00~, 포장, 배달은 가능)</li> </ul>	
휴교/휴원	도입 시기	3.16	4.19까지
	교사 등 제한 조치	교장 출석의무, 교사도 원칙적으로는 출석의무를 가지나 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개인적 건강상태, 고령(60세 이상)자 고려)	
	긴급보육서비스제공 (기준등)	경찰, 의료계, 소방서 등 필수직군 종사자 자녀	부모 중 한쪽이 필수직군에 종사 중이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국경 통제	적용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EC,심야열차는 독일-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덴마크, 폴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구간 운영중단</li> <li>○ 그외 기차의 경우 국경지역에서 검사로 인해 운영시간 지연</li> <li>○ 도시간 단거리 기차(RB등) 감축 운영</li> <li>○ 장거리버스(Flixbus, Blablabus는 3.18부터 운영중단)</li> <li>○ 시내대중교통의 경우 승차권판매소 등 운영중단, 승차권 검표중단, 운전사 부족 및 승객감소로 부분적 감축운영(휴가 및 방학시기 배차 계획실시), 운전사승차권 직접판매 중단</li> </ul>	
	LKW 자동 통과 시행 여부		
	PKW 입경 허가 기준		

입국 제한	공항별 지침/운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이외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통한 비EU 회원국 국민 입국 금지(예외 : 독일 및 EU 영주권 및 장기거주비자 소유자)</li> <li>○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현재 공항운영중단 계획 없음 (1일 400 여편 감소) / 23시 이후 야간 비행금지 완화조치 (단 출발지 공항에서 코로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li> </ul>	
병원 관리	해당 주 소재 대형 병원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essische Krankenhausgesellschaft</li> <li>○ 2000개 응급 병상 확보</li> </ul>	긴급하지 않은 수술은 연기
기타			

대분류	세부항목	베를린	비고
감염 관리	주무부처	베를린 보건요양평등부	
	별도 Hotline	· 연방보건부:030-346435100 · 베를린:030-90282828	매일 8-20시 운영
	선별진료소 설치 여부 및 위치	<p>1. Charite Campus VirchowKlinikum Augustenburger Platz 1, 13353Berlin Interne Adresse : Mittelallee1 업무시간 : 월-일 8.00~16.00시 방문전 전화 필수 : Hotline9028-2828</p> <p>2. DRKKlinikenBerlinWestend Spandauer Damm 130, Haus10, 14050Berlin 업무시간: 9.00시부터</p> <p>3. Vivantes Klinikum Prenzlauer Berg Zugangüber Diesterwegstrasse, 10405 Berlin Prenzlauer Berg 업무시간 : 월-금 10.00~19.00, 토/일 10.00~17.00시 방문전 전화 필수Hotline9028-2828</p> <p>4. Vivantes Wenckebach-Klinikum Albrechtstraße, 12099 Berlin 업무시간 : 월-금 10.00~19.00 토/일 : 10.00~17.00시 방문전 전화필수Hotline9028-2828</p> <p>5. Evangelisches Krankenhaus Königin Elisabeth Herzberge Herzbergstraße 79, 10365 Berlin 업무시간: 월-금 10.00-19.00 토/일 : 10.00~17.00</p> <p>6. Gemeinschaftskrankenhaus Havelhöhe</p>	<p>검사비용 : 59Euro</p> <p>○ 검사 필요 의사 확인시 의료보험사 내지 베를린 보건청이 지불</p> <p>○ 독일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보험회사에 사전 문의</p>

		<p>Kladower Damm 221, 14089 Berlin          업무시간 : 월-금 9.00~20.00          방문전 전화필수Klinik-Hotline36501-7222</p> <p>7. Vivantes Klinikum Spandau          Neuendorfer Straße69, 13585Berlin          *방문시 설치된 방향표지따라 별도 장소로 이동          업무시간 : 월-금 10.00~19.00 토/일 10.00~17.00</p>	
	검사 진행 절차	<p>핫라인에 연락하여 여행지 및 현재 건강상태 알림,          이후 담당자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름</p>	
	對밀접접촉자 조치	<p>핫라인에 연락하여 여행지 및 현재 건강상태 알림,          이후 담당자가 안내하는 따름</p>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p>지난 2주내에 확진자와 밀접접촉이 있었을 경우(15분이상확진자와 대화 등)</p>	
정상 운영 대상 기관	적용 기관 구체	<p>생필품 상점, 음료판매업체(심야판매점 포함), 우체국, 서점, 자전거점, 시장, 약국, 의료용품 판매처, 주유소, 은행, 세탁소, 미용실, 신문판대소, 건축자재 판매점, 동물용품 판매점, 도매상, 장의사 등</p>	
	일요일 업무 금지 비적용		
행사 제한	제한기준	<p>50명이상          50명미만 : 참석자명단작성(성명,주소,전화번호)</p>	
식당/대중 시설 제한	대상 시설 및 구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지노, 바, 클럽, 박물관, 영화관, 극장, 수영장, 피트니스 스튜디오, 관광호텔 등 폐쇄</li> <li>· 식당 : 8-18시영업가능. 단 테이블간 간격 1.5m유지</li> <li>· 음식배달 혹은 ,주문후 픽업 가능</li> <li>· 영업 가능 시설 : 슈퍼, 약국, 의료기기, 약품점, 은행, 주유소, 우체국, 미용실, 건축, 조경 및 반려동물물품구입처, 장의사 등 보건위생규칙준수</li> </ul>	
휴교/휴원	도입 시기	<p>2020.03.16 및 03.17 - 4.19 전학교 및 유치원</p>	
	교사 등 제한 조치	<p>교사들 출석 의무 (주마다 별도 예외 규정, 예 60세이상교사, 고위험 환자 해당 교사)</p>	
	긴급보육서비스제공	<p>이하 직업군 자녀에 대해 긴급 보육 서비스 제공</p>	

	(기준등)	· 경찰, 소방소, 구조대, 교도소, 위기대응팀, 대중교통중사, 에너지공급, 폐수 및 폐기물 처리, 의료기관, 공공기관, 유치원 및 학교긴급지원, 시설관리 긴급인원, 운송, 생필품제공	
국경 통제	적용 도로	폴란드, 체코 모든 국경 통과 지정	
	LKW 자동 통과 시행 여부	유럽 연합위원회 : 화물운송을 위한 새로운 지도방침 요구함 고속도로 전용차선 설정 고려	
	PKW 입경 허가 기준	체코 : 유럽에 고정거주자가 아닌 독일국적자 폴란드 : 폴란드 국적자 가자거리 14일, 폴란드국적자 배우자, 직장통근자, 유럽의회 의원, 유럽에 고정된 거주자	
입국 제한	공항별 지침/운영 상황	2020.03.18부터 30일동안 비행엔 국가 국민 입국금지, 장기체류자 허가자 제외  Tegel공항/Schönefeld공항  ○ 현시점 도착승객에 대해 특정 건강상태검사 미실시 ○ 쉐네펠트공항 : 3.19부터 모든 승객 터미널B에서 수속 ○ 테겔공항 : 3.19부터 모든 승객 터미널C에서 수속 * 모든 승객 수속전 온라인 및 현장에서 수속 위치 사전확인 필요	
병원 관리	해당 주 소재 대형병원 병원 지원 정책	다수(상기선별진료소참조) * 베를린시는 긴급대책으로 국제박람회장용지에 추가로 코로나환자1,000을 수용할 수 있는임시 병원설치 계획수립 * 긴급상황시 호텔 및 재활시설도 코로나환자 수용시설로 변경계획	○ 긴급하지 않거나, 일정 조정이 가능한 수술 전면 연기
기타			



대분류	세부항목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코로나19 감염관리	주무부처	주 및 지자체 보건당국
	별도 Hotline	주 및 지자체 핫라인설치
	선별진료소 설치 여부 및 위치	각 지자체 선별진료서 설치
	검사 진행 절차	1. 증상이 있는 경우(자가의심) - 우선 주치의에게 연락, 또는 주치의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 핫라인(116117)으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음  2.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한 경우 - 보건청에서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며 자택 방문 검진 및 테스트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위험지역에 다녀온 사람이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정상 운영 대상 기관	적용 기관 구체	병원, 약국, 생필품 판매상점
	일요일 업무 금지 비적용	생필품 판매상점, 주말시장, 배달서비스, 약국 등은 정상영업시간 외 일요일과 휴일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영업허가
대규모 행사 제한	제한기준	초기에는 1천명이 기준이었으나 18일 현재 모든 소, 대규모 행사 제한
식당/대중시 설 제한	대상 시설 및 구체 내용	○ 술집, 카페,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3.16), 박람회장, 전시회장, 실내외놀이공원, 동물원, 단체버스관광, 클럽활동모임, 스포츠시설(3.17), 게임 및 도박시설, 매춘업(3.16) 금지  ○ 일반 음식점의 경우 테이블 간격 2미터 유지할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업 허가 - 그러나, 이를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예를 들어 퀴르과 같이 완전 휴업을 명령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음.
휴교/휴원	도입 시기	3월 16일 ~ 4월 19일까지
	교사 등 제한 조치	○ 휴교명령은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적용됨. - 교사들은 3월 16일과 17일 출근하여 각 학교별로 회의를 갖고 학생들에게 메일 또는 학교 자체의 온라인 서버를 통해 과제를 내주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  ○ 교사들은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학교가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이 안전이 보장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그룹모임을 가질 수 있음.(단 사전 교장의 허가 반드시 필요)

	긴급보육서비스제공 (기준등)	모든 학교는 휴교하는 기간 중 △부모가 자택근무 불가능하고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직업(보건 의료계: 의사, 간호사, 경찰 등)을 가진 자녀들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도록 함
국경 통제	적용 도로	현재 NRW와 인접하고 있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국경은 통제하지 않고 있음.
	LKW 자동 통과 시행 여부	
	PKW 입경 허가 기준	
입국 제한	공항별 지침/운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일간 EU회원국 국민외 타국민 입국을 불허하는 가운데 관내 국제공항인 뒤셀도르프공항과 쾰른본공항은 항공사들의 운항 축소로 공항 일부구역만 개방하여 사용 - 승객들에게는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발 전 확인할 것을 공지</li> <li>○ 오스나브뤽공항, 파더본/립슈타트공항, 도르트문트공항, Weeze공항 등 국내선 공항은 정상 운영</li> </ul>
병원 관리	해당 주 소재 대형병원	NRW에는 100여개가 넘는 대형병원들이 소재하고 있음
	병원 지원 정책	주정부는 금번 코로나사태와 관련하여, 해당병원 및 간병시설들에 1억5천만유로를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함
기타	호텔숙박	이외 호텔숙박의 경우 긴급한 경우만 허용하고 여행목적의 숙박은 3월18일부터 전면 금지함

대분류	세부항목	1. 함부르크, 2. 니더작센 3. 브레멘 4. 솔레비히-홀슈타인	비고
코로나19 감염 관리	주무부처	연방주 보건청	
	별도 Hotline	1. 040-428284000/ 2. 0511-4505555 / 3. 0421-115 / 4. 0431-7970001	
	선별진료소 설치 여부 및 위치	선별진료소 별도로 설치되지 않음	
	검사 진행 절차	증상이 있는 경우 핫라인 혹은 담당 주치의 우선 연락, 보건청에서 자택 방문검진 및 테스트	
	對밀접접촉 자 조치	자가격리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로버트 코흐 연구소 기준 위험지역 방문자, 밀접 접촉자 및 증상이 있는 자	
정상 운영 대상 기관	적용 기관 구체	식료품 관련 업체, 배송업체, 미용실, 우체국, 은행 등 생활에 필수적인 곳	
	일요일 업무 금지 비적용	비적용	
대규모 행사 제한	제한기준	참석자 수 관계없이 모두 제한	
식당/대중시 설 제한	대상 시설 및 구체 내용	<p>1. Hamburg 박물관,오페라극장/연극장,영화관,청소년문화센터,도서관,음악학원,바,클럽(체육,음악,댄스등),유흥가,무도회 장,게임장,도박장,수영장,사우나,피트니스,(실내/야외)놀이터,종교시설(교회,이슬람사원,유대인회당) 음식점 : 오픈시간 06:00-18:00, 테이블간격 좌우 1.5 미터 유지 개인경조사 부분적 허락 : 장례식/결혼식(100명미만), 당국에서는 취소 또는 연기 권유</p> <p>2. Niedersachsen 박물관,오페라극장/연극장,영화관,청소년문화센터,도서관,음악학원,바,클럽(체육,음악,댄스등),유흥가,무도회 장,게임장,도박장,수영장,사우나,피트니스,(실내/야외)놀이터,종교시설(교회,이슬람사원,유대인회당) 휴가를 위해 니더작센주의 섬으로 입장금지. 이곳 섬에 있는 모든 여행객은 2020.3.26까지 떠날 것 음식점 : 오픈시간:06:00-18:00</p> <p>3. Bremen 박물관,연극장,영화관,바,클럽(체육음악,댄스등),유흥가,무도회장,게임장,도박장,수영장,사우나,피트니스,(실내/</p>	

		<p>야외)놀이터,교회,이슬람사원,유대인회당,여행객투숙불가,병원/요양원방문불가</p> <p>4. Schleswig-Holstein          박물관,오페라극장/연극장,영화관,청소년문화센터,도서관,음악학원,바,클럽(체육,음악,댄스등),유흥가,무도회장,게임장,도박장,수영장,사우나,피트니스,(실내/야외)놀이터,종교시설(교회,이슬람사원,유대인회당)          모든 여행객은 2020.3.18에 호텔에서 체크아웃해야 하고 자기고향으로 돌아가야 함          휴가를 위해 북해(Nordsee)와 동해(Ostsee)의 섬으로 입장 금지          음식점 : 오픈시간:06:00-18:00, 테이블간격 : 좌우 2미터유지</p>	
휴교/휴원	도입 시기	<p>1. Hamburg          2020.03.16-03.29까지 학교 및 유치원 휴교령</p> <p>2. Niedersachsen          2020.03.16-04.14까지 학교 및 유치원 휴교 (부활절방학포함)</p> <p>3. Bremen          2020.03.16-04.14까지 학교 및 유치원 휴교 (부활절방학포함)</p> <p>4. Schleswig-Holstein          2020.03.16-04.29까지 학교 및 유치원 휴교 (부활절방학포함)</p>	
	교사 등 제한 조치		
	긴급보육서비스제공 (기준등)	<p>1.Hamburg          의사, 간호사, 경찰관 등 중요 직종에 종사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14세미만 아이들에게 8시-16시까지 긴급보육서비스지원</p> <p>2.Niedersachen          의료관계자(의사, 간호사 등), 경찰관 등 중요 직종에 종사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긴급보육서비스 지원</p> <p>3.Bremen          의료관계자(의사, 간호사 등), 경찰관 등 중요 직종에 종사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긴급보육서비스지원</p> <p>4.Schleswig-Holstein          의료관계자 (의사, 간호사 등) 대상으로 긴급보육서비스지원</p>	

국경 통제	적용 도로	1.Hamburg 없음 2.Niedersachen 없음 3.Bremen 없음 4.Schleswig-Holstein 2020.03.16 8시부터 시행, 덴마크-독일국경(A7,B5,B200)	
	LKW 자동 통과 시행 여부	운송화물차 통과 가능	
	PKW 입경 허가 기준	일상적 회사 출퇴근 목적으로는 통행 가능하며 개인차량은 휴가차 덴마크에서 독일로 들어 오는 차량은 입경가능하고 이외에 국경통과해야할 사항일 때 국경에서 컨트롤중인 경찰에게 설명 해야함	
입국 제한	공항별 지침/운영 상황		
병원 관리	해당 주 소재 대형병원 병원 지원 정책	1.Hamburg UnivertätsklinikumHamburg-Eppendorf(UKE)Hamburg 2.Niedersachen MedizinischeHochschuleHannover(MHH) 3.Bremen KlinikumBremenMitte 4.Schleswig-Holstein UnivertätsklinikumSchleswig-Holstein(UKSH)-Kiel	
기타			



뉴스	
공지사항	>
공관활동	>
언론보도	>

### 공지사항

Home > 뉴스 > 공지사항



제목	<b>금지</b> [긴급] 코로나 관련 주 정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벌 주의 안내
작성자	주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20-03-30

캐나다 내 코로나 19 확산으로 모든 주는 비상사태 또는 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다중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있어 일정 인원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위반 시 벌금 또는 체포 등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동포들이 코로나 19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동포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온타리오주 : 3.28(토) 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시 \$750 벌금
- 퀘벡주 : 3.24(화) 부터 2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시 \$1,000 벌금